

1. 개정이유

보훈단체 수익사업 제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 강화

사업수행자 지정 및 변경하는 것을 주요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수익사업 변경 승인시 사업수행자 지정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추가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단체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서식 신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고유목적사업 전출금 명세서 등의 회계 서
식을 신설하여 단체별로 상이한 실적보고의 통일성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수행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단체가 생산하는 동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직접생산 기준에 따른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본문 중 “직접”을 “그 단체의 명의로” 한다.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제6호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산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의 재무상태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손익계산서 포함)
2.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3. 별지 제11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4.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명세서
5. 별지 제13호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6. 법 제22조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2.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 ----- ----- ----- ----- ----- ----- ----- -----.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u>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
우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직접
생산 기준에 따른 직접 생산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회에 대한 용역등 업종에서의 수익사업 수행자 지정은 2001년 1월 1일 현재 특별지회가 용역등 업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장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③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

----- 그 단체의
명의로 -----.

-----.

제1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u>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u> 2. <u>사업계획 대비 실적 비교표</u> 3. <u>수익금 사용명세서</u> <u><신 설></u> <u><신 설></u> 4. <u>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u>	----- ----- -----. 1. <u>결산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의 재무상태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손익계산서 포함)</u> 2. <u>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u> 3. <u>별지 제11호 서식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u> 4. <u>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사용 명세서</u> 5. <u>별지 제13호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u> 6. <u>법 제22조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u>
--	---

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보훈단체명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통합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 대손충당금						
선급금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권						
유가증권						
.....						
유형자산						
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뒤쪽)

광업권						
임차권리금						
.....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						
장기미수금						
.....						
선급금						
재고자산						
.....						
자 산 총 계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운용자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 채 총 계						
자본						
제약있는순자산						
제약없는순자산						
출자금						
적립금						
잉여금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 및 자본 총계						

210mm×297mm[백상지(80g/㎡)]

손익계산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보훈단체명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통합	고유목적 사업	수익사업
사업수익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재산수입						
매출액						
.....						
사업비용						
보조금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						
수익사업원가						
매출원가						
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						
사업이익(손실)						
사업외수익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						
사업외비용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						
경상이익						
특정목적회원복지비						
재활체육비						
장학회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손실)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보훈단체명				단위: 원
귀속 주체 (사업소별)	경상이익 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²⁾	차기이월 수익금 ³⁾	전입비율 ⁴⁾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작성 방법

- 1)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이익을 말한다.
- 2) 회원복지비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고자 수익사업소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 3)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이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법인세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상의 이월이익 잉여금 계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경상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명세서

보훈단체명		단위: 원					
전기이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¹⁾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²⁾				차기이월
			회원복지비 지출		단체운영비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자수익						
	수익사업						
	수익금						
	...						

작성 방법

- 1) 당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실제 비용 지출이 일어난 항목의 대체과목을 의미한다.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¹⁾²⁾

보훈단체명				단위: 원
구 분	항목1	항목2	...	
중앙회				
##지부 ³⁾				
...				

작성 방법

- 1) 회원복지비용은 비용으로 인식가능한 지출 만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원복지를 위한 자산구입 등 순자산 증가 계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란에 구분 기재하고 별표로 상세 내역 정보제공(일반관리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복지비용 성격 포함)
- 2) 복지비 지출 항목 산정 기준
- 전체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우 회원복지로 인정
예시) 회원 전체에게 현금 지급, 복지회관 운영 관련 지출, 재활체육 관련 지출, 명절, 기념일 계기 회원 대상 선물
 - 일부 회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예시) 지부, 지회 단위 방문 회원 식대, 불우회원, 고령회원, 환자 등 복지 필요성이 큰 대상자에 대한 위문품, 위문행사, 장학금, 경조사 등
 -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예시) 회원가족(유가족 포함) 중 복지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회원복지비로 볼 수 없는 경우
 - 중앙회에서 지부지회에 지원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단체운영비로 보되, 회원복지에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회원복지비로 인정
 - 회원복지비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수혜대상이 임직원, 지부장, 지회장인 경우에는 단체운영비로 봄
 - 다른 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원금 등은 단체운영비로 봄
 - 임직원워크숍, 대의원연찬회 등은 단체운영비로 봄
 - 임직원 식대 등은 단체운영비로 봄
- 3) 수익사업 사업소가 본회로 전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에 자체로 지출한 내역